



신산업 특화 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일	2021. 7. 1
개정일	2023. 3. 1
개정차수	5차
담당부서	신산업특화사업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성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신산업 특화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신산업 특화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
2.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 감독
4.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예산배분 및 집행관리
5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3조 (조직 및 임명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두며,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신산업 특화 사업단의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4조 (책임교수 및 연구원 등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교수 및 연구원 등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신산업 특화 사업단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21.11. 1)

② 신산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, 학과 사정에 따라 신산업 지원사업 이외의 교과목을 6학점 이내로 배정할 수 있다. (신설 2022. 1. 1, 2023. 3. 1)

[제목개정 2021.11. 1]

제 3 장 위원회

제 5조 (사업 추진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의 원활한 추진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'추진위원회' 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2. 8. 1)

② (삭제 2022. 8. 1)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1. 9. 1)

1. 신산업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
2. 신산업 지원사업 사업비 운영의 집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신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제 6조 (삭제 2021. 9. 1)

제 7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‘평가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
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(개정 2021. 9. 1)

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(신설 2021. 9. 1)

1. 신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
2. 신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평가 및 심의
3. 기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8조 (실무운영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실무적 논의를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
2. 선발 기준·방법 수립 등 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사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[전문개정 2021. 9. 1]

제 9조 (성과관리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과와 그와 부수된 제반사항들을 관리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신산업 지원사업의 핵심성과지표·자율성과지표 모니터링
2. 신산업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별 실적 및 성과 관리
3. 신산업 지원사업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4. 기타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[전문개정 2021. 9. 1]

제10조 (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 사업의 교육과정 개발 및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융합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2. 코스 별 교과목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편성(개발·개편·변경)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[전문개정 2021. 9. 1]

제11조 (교육혁신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 사업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인증 및 교육품질 관리 등 제반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 성과 질 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생 인증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[전문개정 2021. 9. 1]

제12조 (거버넌스운영위원회) ① 신산업 특화 사업단 사업의 인력양성 교육 연계 및 거버넌스 운영 등 제반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거버넌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ACE 스페이스 구축, ACE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사항
2. 신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[전문개정 2021. 9. 1]

제13조 (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 (기타)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본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